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카벤다짐*’, ‘아세타미프리트**’이다.

* 카벤다짐 :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 아세타미프리트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주)태양무역 (서울 구로구)	목이버섯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 (중국)	6,900kg (1kg)	2026.5.26. (포장일로부터 2년)	카벤다짐	0.01 이하	0.17
성민통상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백목이버섯	GUTIAN YUMEIJIA FOOD CO.,LTD (중국)	2,880kg (1kg)	2026.4.2.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	아세타미 프리트	0.01 이하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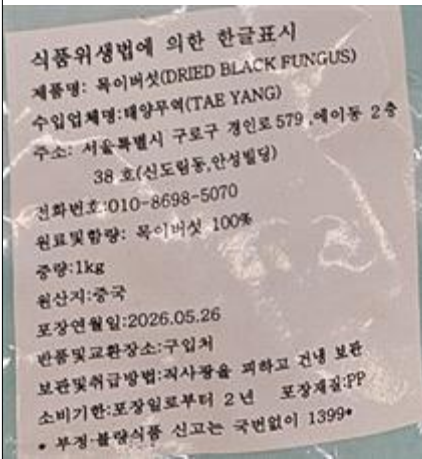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남백상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



제품 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목이버섯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 (주)태양무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중량: 1kg • 원산지: 중국산 • 포장일자(소비기한): 2026.5.26. (포장일로부터 2년)	 
• 제품명: 백목이버섯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 성민통상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 중량: 1kg • 원산지: 중국산 • 포장일자(소비기한): 2026.4.2.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	 